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541
------------	------

2024년 3월 5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김성준 의원 외 28명

나. 제안일자 : 2024년 2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2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322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2024년 3월 5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성준 의원)

가. 제안사유

- 서울시내 마을버스 대부분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 안전점검 시 전기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 추가
-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4. 2. 14. ~ 2024. 2. 18.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원안가결¹⁾
 - 전기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전기 배터리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 조례상의 알기 쉬운 용어(“소요되는”을 “필요한”, “투명성 제고”를 “투명성을 높이기”)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음

1) 제322회 임시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제출(서울시 버스정책과-6090(2024.2.19.))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CNG(압축천연가스)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를 친환경 차량(전기, 수소버스)으로 교체·도입 중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시내버스 안전 장비 점검 사항을 “CNG 용기”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보완하는 한편 그 밖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전기버스의 도입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자 안전 점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 차 없는 날’ 기념식에서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을 발표²⁾한 이후 2020년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³⁾’을 마련하여 2025년까지 친환경 차량인 전기·

2) “서울 전기차 시대” 공동선언 (2017.9.24.)

- 참여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환경부, 주한EU대사, 우리은행,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주요내용: 전기차 보급확대, 모든 주유소 급속 충전기 설치, 관련 조례 개정 등

3)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2020.7.28., 환경정책과-10858)

<추진전략>

(1) 그린빌딩: 저탄소 제로에너지 빌딩 전환추진

(2)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 도로다이어트 및 자동차 운행수요 감축 등

수소버스 4,000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대기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을 위한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서울시는 ‘친환경(전기·수소) 버스 도입 계획’⁴⁾을 통해 2026년까지 친환경 전기 마을버스 572대 교체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마을버스 대폐차 수요에 맞춰 지난 2023년까지 친환경 전기 마을버스 171대를 도입하였음

※ 서울시 마을버스 전기버스 도입 현황⁵⁾

연도별	합 계	마을버스 차량		
		CNG	경 유	전 기
2018년	1,578대	1,168대 (74.0%)	410대 (26.0%)	-
2019년	1,581대	1,137대 (71.9%)	444대 (28.1%)	-
2020년	1,588대	1,106대 (69.6%)	474대 (29.8%)	8대 (0.6%)
2021년	1,583대	1,110대 (70.1%)	448대 (28.3%)	25대 (1.6%)
2022년	1,572대	1,070대 (68.1%)	426대 (27.1%)	76대 (4.8%)
2023년	1,612대	1,039대 (64.5%)	402대 (24.9%)	171대 (10.6%)

(3) 그린숲: 녹지 확보를 통한 온실가스 상쇄 (4) 그린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가속화

(5) 그린사이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 자원순환 산업육성 등

4) 2023년 친환경(전기·수소) 버스 도입계획(버스정책과-12282, 2023.4.6.)

- 도입목표: 2026년까지 친환경버스 2,925대(마을버스 572대 포함) 도입 목표

· 시내버스: 신규 시내버스 친환경버스 도입 의무화(2021년~)로 CNG→전기·수소버스로 교체 확대

· 마을버스: 대폐차 수요에 따라 2026년까지 전기버스 572대 교체목표

- 확대방안: 차고지 내 충전시설 확충 및 인센티브 제공

5) 서울시 내부 자료

○ CNG, 경유(디젤) 차량과 친환경 차량인 수소·전기버스는 연료별 내연기관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동력 전달 방식이 차량에 따라 달라 전기 배터리 등 안전 점검에 있어 세부 진단 항목의 변화⁶⁾도 발생하므로 각 차량구조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17조제4항⁷⁾에서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버스와 관련하여 전기 배터리 등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CNG, 경유(디젤), 전기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차량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차량의 안전관리 대상을 현행 “CNG 용기”에서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변경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6)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기차 배터리 검사로 내차 안전 지킨다! (보도자료, 2022.8.11.)

- 자동차 검사시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을 진단하고, 그 정보 제공
- 전기차 배터리 성능 항목: 총 동작시간, 누적 충·방전량, 배터리 충전상태, 배터리 열화상태 등
- 안전 관련 항목: 고전압 부품절연, 배터리 셀간 전압, 배터리 모듈온도

7)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④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41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2일
발 의 자: 김성준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김기덕, 김인제,
김종길, 김혜지,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철성, 봉양순, 서준오,
송도호, 송재혁, 아이수루,
, 왕정순, 우형찬, 유정희,
윤기섭, 이경숙, 이민옥,
이승미, 이영실, 임규호,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재란 의원(28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내 마을버스 대부분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 전기 배터리 점검을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 추가
- 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
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생략)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사업자가 안전 점검 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을 추가하게 하고 일부 자구 수정을 시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